

우리집실버양원 운영규정 개요

우리집실버양원은 노인복지법 제22조 제2항 [별표5]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.

1.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규정

- 종사자 근무체계 : 직종별 직원배치인력(어르신2.1명당 1인 요양보호사 배치)

시설장	사회복지사	작업치료사	간호조무사	요양보호사	협약병원 의사
1명	3명	1명	2명	17명	1명
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,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

2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입소정원	시설입소 43명
모집방법	인터넷 홈페이지,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협력, 보호자 통하여 모집.

3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- 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이 최대 계약기간(가족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 시 축소 가능)
- ② 우리집실버양원의 의무 :
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기초한 의무
- ③ 공단의 의무 :
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 체결 후, 서비스에 대한 공단부담금제공
- ④ 보호자 의무 :
가족이나 보호자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소 14일 전 시설 통지 계약해지
- ⑤ 시설의 계약 해지요구
 - 입소 중 건강상의 문제로 10일 이상 장기 병원 입원이 예상되거나 확정되며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
 - 입소 중 입소자 가족이 계약서상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
 -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 내용 외에 직원에게無理하게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
 - 입소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시설 내 난동,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가하여 시설 및 직원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

4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

-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요양급여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(또는 보호자)안내한다.
- ③ 계약기간이 만료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
④ 이용절차방법은

장기요양인정서 제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·군·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)→입소,이용의뢰서
장기요양기관에 제출→서류확인→공단에 입력→서비스 이용

5. 서비스이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① 일상보호 서비스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몸청결, 몸단장, 머리감기, 옷갈아 입히기, 목욕도움, 배설도움
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치매문제행동대처등
- ② 보건·의료서비스.(촉탁의 협약,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, 의료서비스 제공)
- ③ 사회적응서비스
- ④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
- ⑤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
- ⑥ 신체,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,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제공,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 상담
실시
- ⑦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,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,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
- ⑧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,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 철저

6. 특별한 보호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-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:
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
안전벨트 사용,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등을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.
- 합숙용 침실을 이용 도중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및 감기 전염등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해가 예상될
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
가족이 부담한다.

7.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-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
-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련일지에 기록한다.
- ②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
-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방문,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.
-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/가족
부담
-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-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
경우, 요양원에서는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8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

- ①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파손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
- ③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 행정사 필요시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 재배치할 수 있다.

9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시설은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-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
 - 입소자/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
 -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- 입소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, 입원, 사망한 경우

10.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- 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,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개정은 시설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, 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.

11.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-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 -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. 평가에 관한 사항
 -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. 평가에 관한 사항
 -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④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
 - ⑤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
 - ⑥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 -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⑧ 시설의 회계 및 예산.결산에 대한 사항
 - ⑨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⑩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.사고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.군수.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① 시설의 장
 - ② 시설거주자 대표
 - ③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
 - ④ 시설종사자의 대표

- ⑤ 해당 시.군.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-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.